



공정거래 I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2017. 7

- I. 서론
- II.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 1. 우리나라의 현황
 - 2.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개선 논의
- III. 주요국의 공정거래규제기관과 입법례
 - 1. 미국
 - 2. 유럽연합(EU)
 - 3. 독일
 - 4. 일본
- IV. 시사점
 -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지위 그리고 전속고발권
 - 2. 구조적 조직 형태
 - 3.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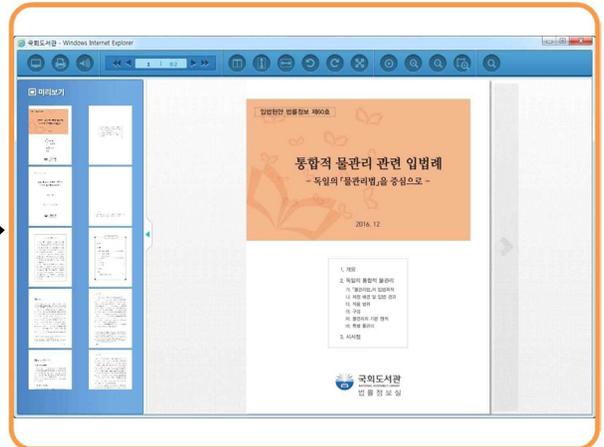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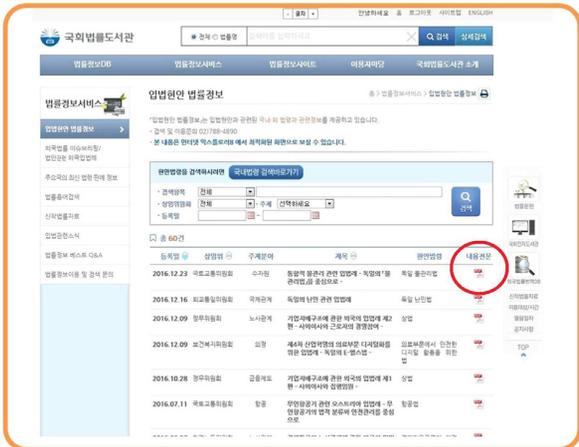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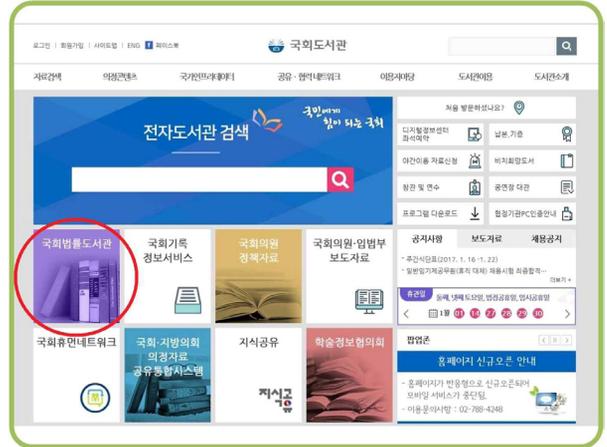
「입법현안 법률정보」 원문보기 안내

[국회전자문서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국회전자문서시스템 → 국회정보시스템 → 국회법률도서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 국회법률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정보를 수록한 입법 참고자료입니다.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law.nanet.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4호

공정거래 I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2017. 7

작성자 :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률정보실

〈Keywords〉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준사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성, 공정거래규제기관

요 약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다수의 의원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독일, 일본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규제 기관을 살펴보고 입법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일본의 입법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 규제기관의 위원장과 위원의 신분상 차이를 두고 있는 국가는 없어 보인다. 또한 대체로 공정거래규제기관의 위원장과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경쟁총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집행위원의 보좌기관의 성격이지만 그 운영의 독립성, 막강한 권한과 위상은 다른 주요국의 공정거래규제기관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독일의 연방카르텔청도 비록 연방경제에너지부의 관할에 속해있지만 독일 특유의 법치주의 인사제도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미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가 등장하였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의 반 카르텔 정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공정거래규제기관이 도입된 측면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생적으로 경제적 집중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를 위한 전문적 업무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여왔다고 볼 수 있다.

목 차

【요약】

I. 서론	1
II.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2
1. 우리나라의 현황	2
2.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개선 논의	5
III. 주요국의 공정거래규제기관과 입법례	9
1. 미국	9
2. 유럽연합(EU)	13
3. 독일	18
4. 일본	22
IV. 시사점	25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지위 그리고 전속고발권	25
2. 구조적 조직 형태	26
3. 전문성	27

I. 서론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통령 후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¹⁾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대통령에 의한 임명 과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²⁾ 국회에서도 5월 4일에 이학영 의원이, 그리고 같은 달 23일에는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는 것은 “양극화 해소, 불평등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독일, 일본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규제 기관을 살펴봄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정다슬, “문-안, 누가돼도 세지는 공정위 … 전속고발권 폐지될까”, 이데일리 기사(2017.4.21.).
 2) 조형국,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1) “대기업 부당거래감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 경향신문 기사(2017.6.14.).
 3) “제20대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 「국회보」 기사, 국회사무처(2016.7.).

II.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1.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적 운영 조직이 어떤 형태와 지위를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와 같이 제·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조직과 관련된 연혁을 간단히 살펴본다.

<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변천사

연월일	주요 내용
1981.04.03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설치 (공정거래실신설:1심의관 2심사관 5개과, 정원 75명)
1990.04.07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 이관 (사무처신설:3국 1관 12개과, 3개 지방사무소, 정원 221명)
1994.02.21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약관심사업무 이관 (4국 18개과 4개 지방사무소, 정원 278명)
1994.12.23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위원장·부위원장→차관급, 5국 1관 21개과 2담당관, 4개 지방 사무소, 정원 343명)
1996.03.08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 신설, 조사1·2국 → 조사국, 정원 385명)
1997.08.12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신설 (6국 3관 23개과 4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 정원 422명)
1999.05.24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연월일	주요 내용
2005.12.19	사무처조직을 [본부-팀제]로 개편 (4본부 2관 2단 33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84명)
2007.08.07	시장분석본부 신설 (5본부 2관 2단 36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04명)
2008.02.29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및 [대국-대과체제]로 개편(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2009.04.21	정부조직의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4과 1팀 축소(5국 3관 1대변인, 21과 11담당관(1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2011.09.15	하도급법 강화 및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2과 11담당관 1팀(총34개과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14명)
2013.03.23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따라 유통거래과 신설 및 인력증원(5국 3관 1대변인, 23과 11담당관 1팀(총35개과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23명)
2013.03.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 감축 (5국 3관 1대변인, 23과 12담당관(총35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19명)
2013.09.17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위하여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총36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0명)
2013.12.11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정원 감축(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총36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27명)
2016.12.13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를 위해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및 인력증원(5국 3관 1대변인, 26과 11담당관(37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6명)

가.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의 역사적 과정

상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변천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극소수의 자본과 자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수의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불균형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급격하게 발전했지만, 1963년 삼분(三粉) 폭리사건⁴⁾ 등 시장의 경쟁이 약화되고 경제력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는 폐해가 나타났다.⁵⁾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⁶⁾ 이에 대응하여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 제정되면서 1981년 4월 3일 (구)경제기획원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변경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르게 된다.

나. 독점규제법의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공정거래위원회는 1989년 대형백화점 사기세일 사건 적발⁷⁾을 계기로 1994년 12월 23일에 경제기획원 소속기관에서 차관급의 중앙행정기관으로

- 4) 소수의 대기업이 시멘트, 밀가루, 설탕시장을 독점하고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작함.
- 5) 정책개발기획단, “공정거래제도 도입 20년-정책변천사·20주년 기념행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01.3.30.), 1면.
- 6) 권오승, “한국 독점규제법의 개선”, 「법학」 제41권 제1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2000.6.), 122면.
- 7) 1989년 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백화점 사업자에 대해 허위로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판매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소비자 불신이 극에 달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백화점을 사기죄로 고발하면서 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52명의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993년 9월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1994년 12월 형사소송 역시 백화점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김현길, “명칭도 가지가지, 1년 내내 주~욱… 대한민국은 ‘세일 공화국’”, 국민일보 기사(2016.1.29.).

독립하게 된다.⁸⁾ 이는 「정부조직법」⁹⁾ 개정에 따른 독점규제법 개정의 형태¹⁰⁾로 이루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었다(독점규제법 제35조). 이후 1996년 3월 8일에 “공정거래위원회직제”¹¹⁾를 전부 개정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개선 논의

가. 독점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대 국회)

2016년 6월 23일에 안철수 (전)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조사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제도 30년의 발자취와 주요 성과 및 특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1.3.29.), 2면.

9) 1994년 12월 23일 개정 법률 제4831호.

10) 「정부조직법」 부칙 제3조에 의한 독점규제법 제35조 및 제37조제2항 개정.

11) 대통령령 제14934호.

처하도록 하였다.

같은 달 28일에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7년 2월 2일에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피심인 및 참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수행방식이나 진술조서 작성방식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적인 증거수집 방식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적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현행법 제55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적 사항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였다.

같은 해 3월 29일에 박정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켰다.

또한 같은 해 5월 4일에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 중 국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위원들 간 수평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위원들을 모두 정무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사무처장을 위원과 동등하게 정무직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와 사무처간 대심구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같은 달 23일에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나.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사법기능이라는 점에서,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구별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정무직으로 보하되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5년 이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둘째,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학계의 주류적인 견해가 있다.¹²⁾

12)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경쟁저널』 제107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2004.7.), 6~7면. 같은 취지로 성승제, “공정거래위원회 구성과 조직의 개선방향 검토”(발표 PPT),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및 선진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경제민

이와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5년으로 연장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되 부위원장 제도를 없애는 대신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실무계의 의견도 있다.¹³⁾ 한편 1990년 이전에 (구)경제기획원장관이 가졌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1990년 독점규제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가짐으로써 구조적 독립성이 제고되었다는 견해도 있다.¹⁴⁾ 그런데 이 견해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선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앞선 학계의 주류적인 견해와 다소 거리가 있다.

주화포럼(2017.6.9.), 14면.

13) 김병일, “공정거래위원회, 지나온 30년과 앞으로의 30년”, 「경쟁저널」 제155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2011.3.), 7면.

14) 서성아,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2011.6.), 258면.

Ⅲ. 주요국의 공정거래규제기관과 입법례

1. 미국

가. 역사적 배경

미국의 남북전쟁은 미국의 사회와 경제를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제조업위주의 공업사회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지역에 기반하였던 시장이 전 국토로 확대되면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로 인한 시장지배력의 남용이 발생하였다. 특히 Standard Oil과 같은 거대 기업은 전국 단위의 철도수송에 우위를 점한 반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아예 객차배정도 받지 못하여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에 각 주(州)의 검찰은 회사법 등에 근거하여 대규모 기업들을 규제하려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에 1890년에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 제정되었고, 구체적이기보다는 원칙적인 규정들로 제정되어 법원과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그런데 미국 사회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판결하는 방식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소극적이고 느리다는 불만이 있었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결국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이 제정되었고 1915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출범하게 되었다.¹⁵⁾

15) 조성국, 「미국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2015.11.), 9~13면.

나. 연방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연방거래위원회가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검찰과 법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집행한다.¹⁶⁾ 따라서 연방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태생적 목적과 검찰 및 법원과의 경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을 내린다. 연방거래위원회의 행정명령은 과징금을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 외에 소비자 관련 법률의 집행에도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¹⁷⁾

그런데 연방거래위원회의 진정한 모습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집행이 아니라 법원과 유사하게 상황에 맞게 법을 창조해내는 기능을 할 때이다. 연방거래위원회는 1975년 실제적인 성격의 규칙제정권을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준입법적 권한(rulemaking power)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는 Washington Post지로부터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막강한 입법기관(the second most powerful legislative body in the United States)”¹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단면이라 생각된다.

16) 법률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와 검찰 및 법원이 다루는 공정거래 분야가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첩적인 부분도 있다.

17) 조성국, 앞의 보고서, 7~8면.

18) Kenneth. W. Clarkson & Timothy. J. Muri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since 19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1.

이러한 연방거래위원회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를 두고 “머리가 없는 제4의 정부”로 부르기도 한다.¹⁹⁾

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직 관련 입법례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직을 규율하고 있는 미국연방법전 제15편 제41조에서는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연방거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5명의 위원 중 3명 이하의 위원은 동일한 정당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과 첫 임기를 순차적으로 종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추후 7년의 임기를 마친 위원이 순차적으로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장은 5명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선정한다.

원 문	번 역 문
<p>15 U.S.C. §41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 §41. Federal Trade Commission established; membership; vacancies; seal A commission is created and established, to be known a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which shall be composed of five</p>	<p>미국연방법전 제15편 제41조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제41조 연방거래위원회 설립; 위원; 결원; 인장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연방거래위원회라는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3명 이하의 위원은 동일한 정당의 구성원이어야 한다.</p>

19) 조성국, 앞의 보고서, 49~50면.

원 문	번 역 문
<p>Commissioners,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Not more than three of the Commissioners shall be members of the same political party. The first Commissioners appointed shall continue in office for terms of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years, respectively, from September 26, 1914, the term of each to be designated by the President, but their successors shall be appointed for terms of seven years, (...)</p> <p>The President shall choose a chairman from the Commission's membership. No Commissioner shall engage in any other business, vocation, or employment. Any Commissioner may be removed by the President for inefficiency, neglect of duty, or malfeasance in office. A vacancy in the Commission shall not impair the right of the remaining Commissioners to exercise all the powers of the Commission.</p>	<p>임명된 첫 번째 위원들은 대통령이 정한 각 임기에 따라 1914년 9월 26일부터 각각 3년, 4년, 5년, 6년, 7년의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하여야 하는 반면, 그 후임자들의 임기는 7년이다, (...)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택하여야 한다. 어떤 위원도 다른 영업, 직무, 고용에 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위원의 무능력, 직무불이행,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나머지 위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2.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입법과 의사결정을 하는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European Council), 집행부의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회계 감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금융정책에 관하여 집행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그 주요 기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타의 국가 정부와는 다른 구조를 보인다.

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경쟁총국

유럽연합에서 반독점(antitrust) 관련 'EU기능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01, §102) 등과 같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집행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한다.²⁰⁾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거나 유럽연합의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따라 한 명씩 지명하고 유럽연합의회에서 승인된 집행위원 및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며, 각 집행위원들은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20)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반독점 홈페이지 참조(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overview_en.html, 2017.6.26. 방문).

일을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입법안을 거의 독점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막강하다.²¹⁾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좀 더 세부적인 집행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의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에서 담당한다.²²⁾ 경쟁총국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업계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업계조사

1) 업계조사

‘업계조사’(sector inquiry)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어떤 업계의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시장참가자들의 반경쟁적 행위나 시장의 반경쟁적 구조라고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업계와 이에 사용되는 약관 등을 심층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조사는 대략 2~3년이 소요되고 해당 분야의 관련 경쟁법 개정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예로는 2015년 5월 6일에 개시된 전자상거래 시장의 업계조사를 예를 들 수 있다.²³⁾

21) 김윤정, 앞의 보고서, 17~18면.

22) 김윤정, 「EU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2015.11.30.), 20면.

23) 최지원, “EU집행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업계조사: e-commerce sector inquiry”, 「경쟁저널」 제181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2015.7.), 128~129면.

2) 업계조사에서 경쟁총국의 권한

업계조사에서 경쟁총국의 권한은 막강하다. 업계조사는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의 제17조²⁴⁾에 의한 것으로, 정보 요구, 진술 청취, 사찰 및 기습조사 등이 가능하며, 경쟁총국에 보고된 정보가 부정확·불완전하거나 또는 애매한 경우에는 과실 또는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출의 최대 1%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경쟁총국은 단순히 업계조사만으로 주어진 임무를 끝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약업계의 경우에는 업계조사 발표 당일 기습조사가 진행되었고, 업계조사 후에는 일부 기업을 상대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규제의 개정도 병행하여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였다.²⁵⁾

24)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Article 17 Investigations into sectors of the economy and into types of agreements

1. Where the trend of trade between Member States, the rigidity of prices or other circumstances suggest that competition may be restricted or distorted within the common market, the Commission may conduct its inquiry into a particular sector of the economy or into a particular type of agreements across various sectors. In the course of that inquiry,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undertakings or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concerned to supply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giving effec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and may carry out any inspections necessary for that purpose.

The Commission may in particular request the undertakings or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concerned to communicate to it all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The Commission may publish a report on the results of its inquiry into particular sectors of the economy or particular types of agreements across various sectors and invite comments from interested parties.

2. Articles 14, 18, 19, 20, 22, 23 and 2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25) 최지원, 앞의 글, 135~137면.

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직 관련 입법례와 경쟁총국

「유럽연합조약」 제17조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독립성에 의심이 없고 전반적인 능력과 유럽연합의 책무를 고려하여 집행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독립성이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이 소속 국가는 물론 어느 국가, 기관, 단체, 조직, 관청, 회사 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동 조약 제17조제3항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또한 집행위원의 선정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에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사항은 동 조약 제1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244조²⁶⁾에서 다시 한 번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철저히 평등한 원칙에 따라서 유럽연합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도입한 회전인사제도(system of rotation)로 집행위원을 선임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조약」에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경쟁총국 조직을 규정하지 않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직무만을 규정할

26)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44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5)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chosen on the basis of a system of rotation established unanimously by the European Council an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principles:

(a) Member States shall be treated on a strictly equal footing as regards determination of the sequence of, and the time spent by, their nationals as members of the Commission; consequent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number of terms of office held by nationals of any given pair of Member States may never be more than one;

(b) subject to point (a), each successive Commission shall be so composed as to reflect satisfactorily the demographic and geographical range of all the Member States.

뿐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제101조부터 제109조에 서도 같은 사항을 규율할 뿐이다. 따라서 법률 상 유럽연합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은 그 집행위원을 보좌하는 팀(Team)과 더불어서 경쟁총국 국장(Director-general) 및 직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의 보좌기구로 이해된다.²⁷⁾

원 문	번 역 문
<p>TREATY ON EUROPEAN UNION (2008/C 115/01) Article 17 1~2. (...) 3. The Commission's term of office shall be five years.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chosen on the ground of their general competence and European commitment from persons whose independence is beyond doubt. In carrying out its responsibilities, the Commission shall be completely independent.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8(2),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neither seek nor take instructions from any Government or other institution, body, office or entity.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p>	<p>유럽연합조약 (2008/C 115/01) 제17조 1~2. (...) 3. 집행위원회의 직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들은 그들의 전반적 능력과 유럽(연합)의 책무에 기초하여 개인적으로 독립성에 의심이 없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집행위원회는 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제18조(2)와 관계없이,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들은 어느 국가나 기관, 단체, 조직, 관청 또는 회사로부터 지침을 받거나 구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집행위원들은 그들의 의무 또는 직무수행에 배치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p>

27) 자세한 사항은 유럽연합 경쟁 홈페이지 참조(http://ec.europa.eu/dgs/competition/index_en.htm, 2017.6.26. 방문).

원 문	번 역 문
<p>incompatible with their duties or the performance of their tasks.</p> <p>4. (...)</p> <p>5. (...)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chosen from among the nationals of the Member States on the basis of a system of strictly equal rotation between the Member States, reflecting the demographic and geographical range of all the Member States. This system shall be established unanimously by the European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4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p>	<p>4. (...)</p> <p>5. (...)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은 모든 회원국의 인구와 지리적 범위를 반영하여 회원국 사이에 엄격하게 평등한 회전인사제도에 기초를 두고 회원국의 국민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그 제도는 유럽연합이사회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제244조에 따라 만장일치로 제정한 것이어야 한다.</p>

3. 독일

가. 카르텔법(경쟁제한금지법)과 역사적 배경

시장의 경쟁자들이 서로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배제하기 위하여 최저 가격을 정하거나 일정한 합의 등을 하는데 이것이 곧 ‘카르텔’(Kartell)이다. 19세기 중반 유럽에서는 이미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는 사교 또는 가족 관계 형태의 카르텔이 있었고,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카르텔은 독점적 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에

위치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카르텔이 있었는데, 1890년대 이후 전국에 걸쳐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적 산업조직으로 변모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1896년에는 「부정경쟁금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이 제정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카르텔이 산업조직의 하나로 인정되어 전성기를 누렸는데, 특히 192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상실을 막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카르텔에 적대감을 가진 연합군의 영향력 하에 1957년에 「경쟁제한금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이 제정되었다.²⁸⁾ 독일에서는 「경쟁제한금지법」을 “카르텔법”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카르텔을 규제하는 법률이 「경쟁제한금지법」이기 때문이다.²⁹⁾ 그리고 제6차 개정을 통해서 독일의 카르텔법은 유럽연합의 조약과 조화를 모색하였다.³⁰⁾

나. 연방카르텔청의 독립성

독일에서 카르텔법의 집행은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이 담당한다. 연방카르텔청은 연방경제에너지부의 관할에 속한다. 비록 연방카르텔청이 연방경제에너지부의 관할에 속하지만 독일 특유의 법치주의

28)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최영순, “독일 카르텔의 입법화논쟁 및 그 과정”, 「경제사학」 제26호, 경제사학회(1996.6.) 참조.

29) 차성민, “독일 카르텔법의 목적과 기능”, 「경쟁법연구」 제9권, 한국경쟁법학회(2003.4.), 333~334면.

30) Meinrad Dreher, 홍명수 역, “독일카르텔법의 현재와 미래”, 「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2001.6.), 140~145면.

인사제도로 인해 독립성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연방카르텔청장의 경우 1999~2007년에는 당적이 없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맡았고, 2007~2009년에는 야당 소속의 전문가가 맡았다. 즉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방카르텔청장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능력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수장직을 유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에서는 연방카르텔청을 독립행정기관으로 변경하려는 논의가 많지 않다.³¹⁾

다. 연방카르텔청의 조직 관련 입법례

연방카르텔청의 조직을 규율한 「경쟁제한금지법」 제51조에 따르면 연방카르텔청은 내부적으로도 위계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한 명의 의장과 2명의 배석자로 구성되는 법원의 합의부와 유사한 합의제 심결기구로서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의장은 연방경제에너지부의 확인을 거쳐서 업무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의장과 배석자 3인 모두 종신직 공무원이며 법관직 또는 고위행정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원 문	번 역 문
<p>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51 Sitz, Organisation (1) Das Bundeskartellamt ist eine selbstständige Bundesoberbehörde mit dem Sitz in Bonn.</p>	<p>경쟁제한금지법 제51조 소재지, 조직 (1) 연방카르텔청은 본에 소재지를 둔 독립적 연방 기관이다. 연방카르텔청은 연방경제에너지부</p>

31) 홍중현, 이상경, 윤혜선, 서보국, 한동훈,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2), 97~99면.

원 문	번 역 문
<p>Es gehört zu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Energie.</p> <p>(2) Die Entscheidungen des Bundeskartellamts werden von den Beschlussabteilungen getroffen, die nach Bestimmun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Energie gebildet werden. Im Übrigen regelt der Präsident die Verteilung und den Gang der Geschäfte des Bundeskartellamts durch eine Geschäftsordnung; sie bedarf der Bestätigung durch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p> <p>(3) Die Beschlussabteilungen entscheiden in der Besetzung mit einem oder einer Vorsitzenden und zwei Beisitzenden.</p> <p>(4) Vorsitzende und Beisitzende der Beschlussabteilungen müssen Beamte auf Lebenszeit sein und die Befähigung zum Richteramt oder zum höheren Verwaltungsdienst haben.</p>	<p>의 업무영역에 속한다.</p> <p>(2) 연방카르텔청의 결정들은 연방경제에너지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의결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의장이 업무규칙을 통해서 연방카르텔청의 업무의 분배와 진행을 정한다. 업무규칙은 연방경제에너지부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p> <p>(3) 의결부서는 한 명의 의장과 2명의 배석자로 구성된 상태에서 결정한다.</p> <p>(4) 의결부서의 의장과 배석자는 종신직 공무원이어야 하며 법관직 또는 고위행정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p>

4. 일본

가. 독점금지법과 2013년의 개정

일본은 1947년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소화 22년4월14일, 법률 제54호, 이하 “독점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 기관이 설립되었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미국의 「셔먼 반독점법」 영향을 크게 받았고 유럽연합의 「경쟁법」(TFEU)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²⁾ 그런데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會)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심판절차까지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입법적으로 수용되면서 2013년 독점금지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심판기능이 법원으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준사법적기관으로서 공정취인위원회의 위상은 약화되었다.³³⁾

나. 공정취인위원회와 독립성

공정취인위원회는 「내각부설치법」(內閣府設置法) 제49조제3항과 독점금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1947년에 행정관청으로 설치되어 있다.

32) 신영수, 「일본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2015.11.30.), 4~6면.

33) 정대근,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에 관한 소고”, 「일본근대학연구」 제48집, 한국일본근대학회(2015.5.), 331~330면.

공정취인위원회는 행정관청 중에서도 합의제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되며, 타 부처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지만, 국가 행정조직상 내각총리대신의 관할 하에 속해 있고 정부조직 상 내각부의 외국(外局)에 속한다. 사건의 조사나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적 기관이지만, 규칙제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준입법적 기관의 성격도 있다.³⁴⁾

한편 일본에서 공정취인위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거론된다. 첫째, 독점금지법을 운용하려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독점금지법의 운용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 공정취인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이다. 특히 공정취인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2013년의 독점금지법 개정을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³⁵⁾

다. 공정취인위원회의 조직 관련 입법례

독점금지법 제27조에 따라 공정취인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있지만 동법 제28조에서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9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35세 이상으로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34) 신영수, 앞의 보고서, 19~20면.

35)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하야시 슈야, “2013년 개정 일본 독점금지법에 대한 검토”, 「경쟁법연구」 제30권, 법문사(2014.11.), 71~94면 참조.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은 일왕이 인증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 모두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다.

원 문	번 역 문
<p>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昭和二十二年四月十四日法律第五十四号) 第二十七条 (...)</p> <p>② 公正取引委員会は、内閣総理大臣の所轄に属する。</p> <p>第二十八条 公正取引委員会の委員長及び委員は、独立してその職権を行う。</p> <p>第二十九条 公正取引委員会は、委員長及び委員四人を以て、これを組織する。</p> <p>② 委員長及び委員は、年齢が三十五年以上で、法律又は経済に関する学識経験のある者のうちから、内閣総理大臣が、両議院の同意を得て、これを任命する。</p> <p>③ 委員長の任免は、天皇が、これを認証する。</p> <p>④ 委員長及び委員は、これを官吏とする。</p>	<p>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소화22년4월14일 법률 제54호) 제27조 (...)</p> <p>② 공정취인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 소관에 속한다.</p> <p>제28조 공정취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독립적으로 그 직권을 행한다.</p> <p>제29조 공정취인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4인으로 이를 조직한다.</p> <p>② 위원장 및 위원은 35세 이상으로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p> <p>③ 위원장의 임면은 일왕이 인증한다.</p> <p>④ 위원장 및 위원은 공무원으로 보한다.</p>

4. 시사점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지위 그리고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에 관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독점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계의 주류적 논의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것으로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정무직 상임 공무원의 지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위원의 임기와 지위는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례에 따르면 공정거래규제기관의 위원장과 위원의 신분 상 차이를 두고 있는 경우는 없다. 또한 공정거래규제기관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체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곧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논의³⁶⁾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36)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최창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와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 : 미국, 영국, 일본의 법률과 제도”,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2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2017.3.) 참조.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2. 구조적 조직 형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특정한 소속 없이 독립적인 위원회 형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조직의 소속이나 형태를 떠나 공정거래규제기관의 역사적 배경이나 운영에 따라서 독립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경쟁총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집행위원의 보좌기관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그 운영의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은 다른 주요국의 공정거래규제기관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하게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은 비록 연방경제에너지부의 관할에 속해있지만 독일 특유의 법치주의 인사제도가 연방카르텔청의 독립성에 큰 영향을 주면서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제4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검찰 및 법원과의 지속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언젠가 그 독립성과 위상은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구조 속에 있지만 최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독점금지법을 개정함으로써 그 기능과 위상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전문성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다른 국가와 다소 다른 상황에서 출범하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존 검찰과 법원의 미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등장하였고, 유럽연합의 경쟁총국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통합과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거래를 제거하려는 취지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은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연방카르텔청의 설립 시기로 볼 때 연합군의 반 카르텔 정서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깊게 배여 있었고, 일본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980년대 경제력의 집중과 그로 인한 폐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차관급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발돋움한 것 또한 1989년 대형백화점 사기세일 적발과 같은 공정거래규제기관으로서의 전문적 역량이 드러나면서였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과 제도적 뒷받침도 있었지만, 그 스스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상 전문성을 키워나감으로써 그 위상을 높여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제2부에서는 업무상 전문성 강화의 한 부분으로 ‘빅데이터와 공정거래’를 다룰 예정이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2012】

- 1 대규모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2012. 7)
- 2 주요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 입법례 (2012. 8)
- 3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2012. 8)
- 4 농업재해보험 관련 외국입법례 (2012. 9)
- 5 민생치안 관련 외국입법례 (2012. 10)
- 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2012. 10)
- 7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2012. 11)

【2013】

- 8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2013. 1)
- 9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2013. 4)
- 10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2013. 5)
- 11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2013. 6)
- 12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례 : 징벌적 손해배상 vs 배액배상 (2013. 6)
- 13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8)
- 14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제한을 위한 스위스 헌법 개정 (2013. 9)
- 15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지원 법률 (2013. 10)
- 16 국회선진화법 중 안전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3. 11)
- 17 전자적 개인정보 파기 위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12)

【2014】

- 18 공직자 뇌물수수 처벌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2)
- 19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2)
- 20 일본의 국가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2014. 3)
- 21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4)
- 22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4)
- 23 카페리어객선 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개선과제 (2014. 5)
- 24 고아저작물(Orphan Works)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014. 5)
- 25 해양경찰조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7)
- 26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8)
- 27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미 입법례 및 시사점 (2014. 8)
- 28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9)
- 29 인터넷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연방법제 (2014. 9)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3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사규칙과 시사점 (2014. 11)

3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12)

3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공공장소 감시 관련 독일 입법례 (2014. 12)

33 그래피티(Graffiti)와 사물(실존체) 손상에 관한 독일 입법례 (2014. 12)

【2015】

34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개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

35 일본 국선번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5. 2)

36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2)

37 감염병 대유행(에볼라)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관련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3)

38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관련 입법례 (2015. 3)

39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4)

40 모성보호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5)

41 ‘혐오표현(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5. 5)

42 공직 후보자의 사전 검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6)

43 감염병 관리 개선방안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2015. 8)

44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표시제도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9)

45 경영권 방어 중 차등의결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9)

46 보험 사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1)

47 성범죄에 관한 독일 입법례 (2015. 11)

48 미국의 통신자료요청제도에 관한 입법례 (2015. 12)

【2016】

49 무단결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6. 2)

50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불공정추심행위 규제에 관한 미국 입법례 (2016. 2)

51 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일본 입법례 (2016. 3)

52 경제특구의 노사관계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입법적인 대안 (2016. 5)

53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 및 미국 입법례 (2016. 6)

54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배구조와 평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6. 6)

55 무인항공기 관련 오스트리아 입법례 (2016. 7)

56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편 (2016. 10)

57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2편 (2016. 12)

58 제4차 산업혁명의 의료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입법례 (2016. 12)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59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례 (2016. 12)

60 통합적 물관리 관련 입법례 (2016. 12)

【2017】

61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 (2017. 1)

62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와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미국, 영국, 일본의 법률과 제도 (2017. 3)

63 오스트리아의 산란계 밀집사육 금지 관련 입법례 (2017. 3)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4호

발 행 인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홍정순 법률정보실장
집 필 자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
발 행 처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7년 7월 6일
인 쇄 동서문화사 (02-2266-8179)
발간등록번호 31-9720109-001325-14

<비매품>

발 간 등 록 번 호

31-9720109-001325-14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